

**제2684호**  
**2019. 10. 2.**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편집인: 홍보 전 산 과 장 김 창 수  
 전화: 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 구 보

● 고 시

제2019-114호 :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 2  
 제2019-115호 :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 4  
 제2019-116호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 5  
 제2019-117호 :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 6  
 제2019-118호 :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고시 ..... 7

● 공 고

제2019-720호 : 2019.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 10  
 제2019-729호 :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11  
 제2019-735호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14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	--	--	--	--	--	--	--	--	--	--	--	--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 2019-114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우리 구 건물 등에「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부여 및 폐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35-14 외 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 사유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아래 열람부 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청 토지관리과(☎ 3396-5944)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http://www.junggu.seoul.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 고시 후「도로명주소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종전 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 로 명 고시일	
충무로2가 1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35-14	2019.10.02.	조선시대 유학자 이황의 호 인용
		2010.04.22.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종전 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을지로7가 134-2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32	2019.10.02.	거리가게 철거
방산동 70-17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384-1	2019.10.02.	거리가게 철거
회현동1가 196-8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시장10길 2-2	2019.10.02.	거리가게 철거
충무로1가 52-9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시장길 75-1	2019.10.02.	거리가게 철거
충무로2가 111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0길 53-1	2019.10.02.	거리가게 위치 정정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115호

###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구 도로명주소 폐지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21길 23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14-8	2019. 10.2.	건물 말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3)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http://www.junggu.seoul.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도로명주소가 새로이 부여됩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116호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구 신축 건물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기준
		도 로 명 고시일	도 로 명 부여기준
신당동 414-8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21길 23	2019. 10. 2.	다산로21길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 6. 30.	다산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3)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http://www.junggu.seoul.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117호

##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우리구 건물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 변경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 도로명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기준
		도 로 명 고시일	도 로 명 부여기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35-12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가길 32	2019. 10. 2.	명동8가길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 6. 30.	명동길을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3)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http://www.junggu.seoul.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118호

##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정비구역지정 추진을 위한 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4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등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1. 제한지역 위치 및 면적

위치	제한면적
약수동 346번지 일대	12,384㎡
중림동 395번지 일대	26,400㎡
신당동 236번지 일대	51,750㎡

### 2. 제한근거 및 사유

- 제한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 제7항
- 제한사유 : 건축물 노후율 미달 등 정비사업 추진이 불가 할 수 있으며,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분양권을 늘리려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방지하여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 3. 제한대상 행위

- 건축물의 건축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 토지의 분할

### 4. 제한 예외사항 : 재난복구 및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 안전을 위한 대수선 및 용도변경

### 5. 제한기간 : 행위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

※ 사전타당성 조사 후 정비사업 추진 [주민동의 50% 이하, 반대 25% 이상 시 행위제한 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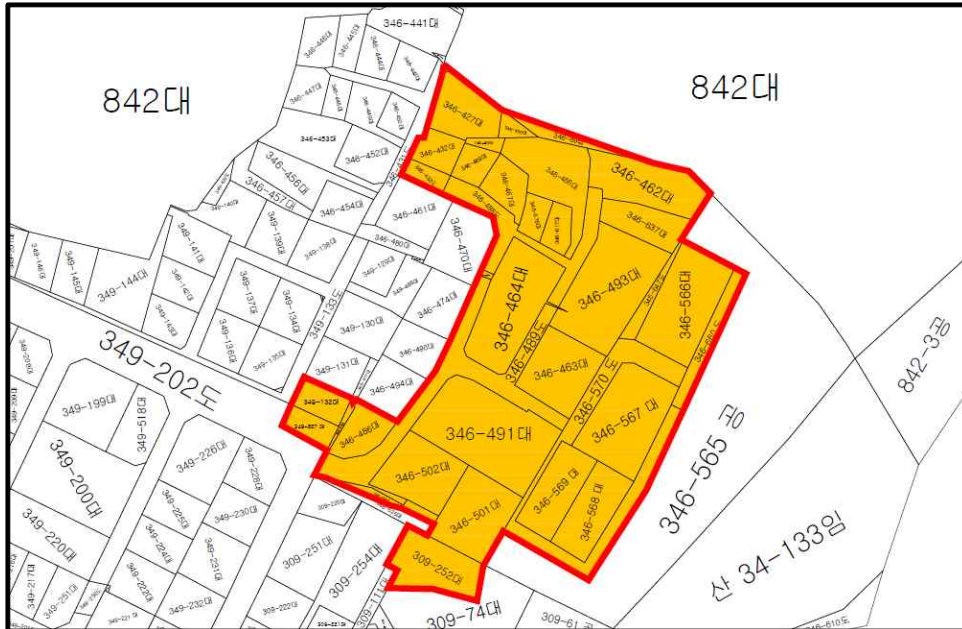
### 6.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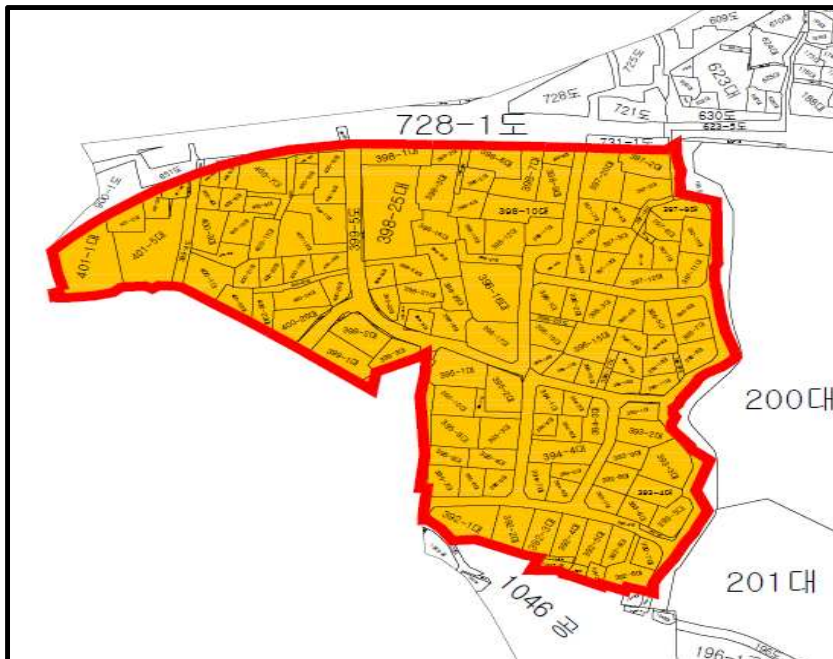
### 7.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주택과(☎02-3396-57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행위제한 지역도면

○ 약수동 346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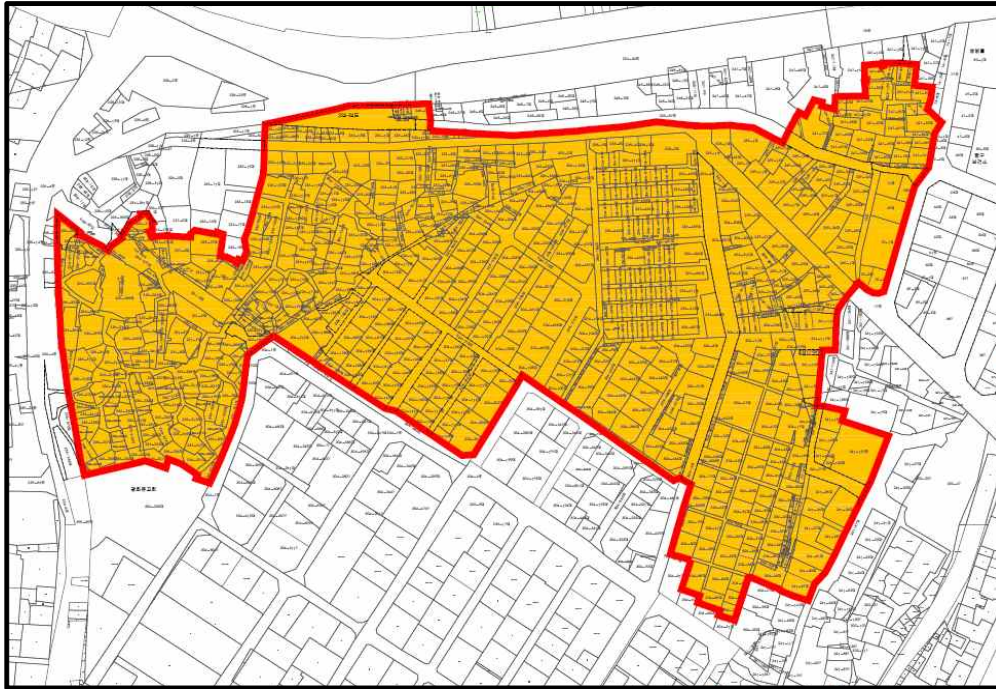


○ 중림동 395번지 일대





○ 신당동 236번지 일대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720호

**2019.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2019. 6. 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9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개별주택가격 공시**

- 가. 공시(가격)기준일 : 2019. 6. 1.기준
- 나. 개별주택수 : 36호  
[ 단독주택 8호, 다가구 2호, 기타(주상용 포함) 26호 ]
- 다. 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소재지, 면적, 가격등
- 라. 열람방법 및 장소 : 구청 세무1과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http://kras.seoul.go.kr>)

**2. 이의신청방법**

- 가. 2019. 6. 1.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19년 9월 30일부터 10월 30일 까지 구청 세무1과 또는 동주민센터 민원실을 통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음.
-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이의 신청서(중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세무1과,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에 작성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729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1. 제정이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여 보호 대상 아동의 빈틈없는 보호 조치 및 사후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위원회 기능 및 구성, 임기 등(안 제3조~제7조)
- 위원회 회의 및 아동 우선보호조치 관련 사항 등 (안 제8조~제13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 교육아동청소년과,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 (예관동), 문의전화 : 3396-5422, FAX: 3396-8743, 메일 : wjddls1010@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기능)**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 2.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여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씩을 둘 수 있다.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으로 한다.
- ⑥ 그 밖의 위원 구성 및 자격, 직무 등에 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13조를 준용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번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③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새로이 개시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1. 제6조제1항에 의한 제척 사유가 있거나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기피를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해쳤을 경우
- 2.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 4. 사망, 질병 등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 3.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4. 그 밖에 안전의 당사자와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단, 이 경우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라 해당 위원 스스로 회피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은 제1항의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관계 법령에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가 규정된 경우는 이를 따른다.
-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 ⑤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우선 조치)**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 개최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조치가 신속·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기타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 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 중구청 공고 제 2019-735호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실제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건물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불명 등으로 직권말소 사실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고(의견제출)기간 : 2019. 10. 01. ~ 2019. 10. 16. (15일간)
2. 공고장소 : 서울 중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조아암길 외 82건
	주 소 (대장상주소)	미기재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 처리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 “ 붙임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현황에 의함 ”
마.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 4. 유의 사항

-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 중구청 토지관리(☎02-3396-59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현황

연번	소재지		건축물대장 현황				소유자	처분 내용
	동명	지번	층수	용도	구조	면적(㎡)		
1	남창동	21-2	지하1, 지상2	미기재	목조	198.34	조아암길	건축물 대장 직권말소
2	남창동	213-8	1층	주택	목조	42.9	선파유랑	
3	남창동	236-2	1층	주택	목조	154.55	삼분구길	
4	남창동	25	1층	점포	목조	62.81	본가삼랑	
5	남창동	26-1	2층	점포	목조	82.64	이동원시	
6	남창동	27-2	2층	점포	목조	112.4	금권삼랑	
7	남학동	16	1층	주택	목조	42.98	비전이삼랑	
8	남학동	17	2층	주택	목조	69.42	고교천대길	
9	남학동	24	2층	주택	목조	247.94	익원청인	
10	명동1가	51	2층	우편소	목조	99.17	근등치	
11	명동2가	18-1	2층	주택	목조	284.3	길영장길	
12	명동2가	63-2	2층	주택	연와조	208.26	물부행웅	
13	봉래동1가	100	2층	주택	목조	49.59	원전화태랑	
14	봉래동1가	54	2층	미기재	목조	135.54	원변운웅	
15	서소문동	127-2	1층	주택	목조	99.17	암원옹육진	
16	소공동	110	2층	요리점	목조	234.71	삼용전병위	
17	순화동	185	1층	주택	목조	51.4	겸전선칠	
18	순화동	23	2층	주택	목조	127.47	중촌장송	
19	신당동	108	1층	주택	목조	110.74	상원직덕	
20	신당동	204-22	1층	주택	목조	56.2	길천신일랑	

연번	소재지		건축물대장 현황				소유자	처분 내용
	동명	지번	층수	용도	구조	면적(㎡)		
21	신당동	204-30	1층	주택	목조	36.36	이칠회병	건축물 대장 작성말소
22	신당동	213-11	1층	주택	목조	90.58	백천옥태광	
23	신당동	214	1층	주택	목조	23.14	서원무택	
24	신당동	217-10	1층	주택	목조	26.45	고목창소	
25	신당동	39	1층	주택	목조	29.75	평소정차	
26	신당동	391-3	1층	주택	목조	48.26	조창길랑	
27	신당동	80-39	1층	주택	목조	33.06	궁본삼규	
28	쌍림동	11	2층	주택	목조	105.78	목촌영삼	
29	쌍림동	116	1층	주택	목조	59.51	약생이등	
30	쌍림동	151-30	1층	주택	목조	72.73	고림병치	
31	쌍림동	151-45	1층	주택	목조	29.75	선복급시	
32	쌍림동	232	1층	주택	목조	95.87	김정풍철	
33	예관동	10-1	2층	영업	목조	181.82	실부흥태랑	
34	예관동	53-4	2층	제조업소	목조	109.09	서본사토	
35	을지로1가	53	1층	점포	목조	26.45	평정삼랑	
36	을지로2가	195-3	2층	점포	목조	403.3	중서구일랑	
37	을지로2가	199-18	5층	영업	철근 콘크리트	423.13	이등자삼	
38	을지로3가	283	1층	점포	목조	16.53	전전사지길	
39	을지로3가	286	2층	미기재	목조	128.93	서전매길	
40	을지로3가	327	1층	주택	목조	82.64	산국봉건십랑	
41	을지로4가	1-2	1층	우편소	연와조	19.83	자문수효	



연번	소재지		건축물대장 현황				소유자	처분 내용
	동명	지번	층수	용도	구조	면 적(㎡)		
42	을지로4가	157-1	1층	주택	목조	128.93	청목유송	건축물 대장 작성말소
43	을지로4가	181	2층	주택	목조	99.17	경편삼천	
44	을지로4가	182-2	1층	주택	목조	52.89	근등복차	
45	을지로4가	208	1층	주택	목조	16.53	길전원일랑	
46	을지로4가	218	1층	주택	목조	56.2	길전원일랑	
47	을지로4가	241	2층	주택	목조	79.34	송원복사랑	
48	을지로4가	245	1층	주택	목조	59.5	길전원일랑	
49	을지로4가	245	1층	주택	목조	56.2	길전원일랑	
50	을지로4가	273	1층	주택	목조	66.12	원전안치	
51	을지로4가	55-3	1층	주택	목조	19.83	조천성양	
52	을지로4가	71	1층	주택	목조	54.5	산전극기	
53	을지로4가	72	2층	주택	목조	72.73	이등흥지보	
54	을지로5가	7	1층	잡용	목조	191.74	암연청차랑	
55	을지로6가	17-16	지상1층	주택	목조	39.67	방하우삼랑	
56	을지로6가	17-18	지상1층	주택	목조	99.18	사본일랑	
57	을지로6가	17-8	지상1층	주택	목조	99.17	용가고조	
58	을지로6가	18-68	지하1, 지상2	주택	목조	115.7	대력현지조	
59	을지로6가	18-74	지하1, 지상2	주택	목조	158.67	상전영일	
60	을지로6가	18-76	1층	창고	목조	29.75	상전영일	
61	을지로6가	49	2층	주택	목조	69.43	목촌의일	
62	을지로7가	122	2층	주택	목조	95.87	영전병길	

연번	소재지		건축물대장 현황				소유자	처분 내용
	동명	지번	층수	용도	구조	면적(㎡)		
63	인현동1가	106	1층	주택	목조	62.81	중정구좌우	건축물 대장 작성말소
64	인현동1가	21	2층	주택	목조	95.87	가창인삼랑	
65	인현동1가	24	2층	주택	연와조	39.66	평우수광	
66	인현동1가	24	1층	주택	목조	26.35	삼만주열	
67	인현동1가	57	1층	주택	목조	30.25	중야수남	
68	인현동2가	123	1층	주택	목조	36.36	석교석정	
69	인현동2가	124, 125	1층	주택	목조	59.5	석석전현태랑	
70	인현동2가	126,127, 128-12	1층	주택	목조	64.46	일고만시	
71	인현동2가	128-3	1층	미기재	목조	79.33	교본홍오랑	
72	인현동2가	181-25, 181-26	1층	주택	목조	82.64	정본진일	
73	인현동2가	202	1층	주택	목조	36.36	재구수증길	
74	인현동2가	202	1층	주택	목조	46.28	재구수증길	
75	인현동2가	45	1층	주택	목조	42.98	상부행장	
76	입정동	11	2층	주택	목조	366.94	송도기차랑	
77	입정동	5	2층	주택	목조	109.1	비선차랑	
78	장충동1가	37-3	2층	주택	목조	125.62	복야성기	
79	장충동2가	112-3	1층	주택	목조	99.17	찬아현길	
80	장충동2가	191-1, 191-13	1층	주택	목조	132.23	적화용랑	
81	장충동2가	191-4	2층	주택	목조	109.09	이등보책	
82	장충동2가	3-4	1층	주택	목조	59.5	능세장태랑	
83	장충동2가	4-1	1층	주택	목조	49.59	상원상이	